##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28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 : 신영대 · 강준현 · 김기표

천하람 • 문금주 • 한준호

임오경 · 안호영 · 홍기원

박지원 · 권칠승 · 박희승

정태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기관 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1 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보장 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현실에서는 대통령 임기종료 직전, 이른바 정권 말기에 특정 인사를 기관장이나 감사, 이사등으로 임명하여, 다음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거나 방해하는 '알박기 인사' 사례가 반복되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기존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충돌과 사퇴 압박이 재현되며, 공공기관운영의 신뢰성과 일관성 또한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

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말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자 함.

또한, 임기 중이라도 공공기관 임원이 국정철학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현저한 직무상 하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관장 및 이사·감사의 연임은 1회,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 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5조제2항"을 "제2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될"을 "한차례만 연임될"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한 예외) ① 제25조 및 제26조에 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할 수 없다. 다만,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직무 대행체제의 운영 결과 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해임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사유 및 경과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             |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             |
| 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 え)                           |
|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             |                              |
| 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            |                              |
| 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              |                              |
| 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             |                              |
| 다)를 둔다.                      |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0. <u>제35조제2항</u> , 같은 조 제3 | 10. <u>제28조의2제2항, 제35조제2</u> |
| 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 <u> </u>                     |
|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                              |
|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                              |
| 해임 건의 등                      |                              |
| 11. ~ 17. (생 략)              | 11. ~ 17. (현행과 같음)           |
| 제28조(임기) ① (생 략)             | 제2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 ②                            |
| 은 1년을 단위로 <u>연임될</u> 수 있     | <u>한차례만 연임</u>               |
| 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 <u>될</u>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             |                              |
| 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             |                              |
| 부를 결정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제28조의2(임원의 임명 및 임기           |

에 대한 예외) ① 제25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임명권자 는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 6개 월 전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공 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 명할 수 없다. 다만, 기관 운영 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직무 대행체제의 운영 결과 기관 운 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도 불구하고 임명권자는 정부 의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 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의 수행이 불가능하 거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 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 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기업・준정 부기관의 임원이 해임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사유 및 경과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 다.